번호			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
2			1. 개요
			· 안전점검: 육안·점검기구로 내재 위험요인 조사(법 2조 5호)
			· 법상 구분: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
			· 긴급안전점검(13조)·정밀안전진단(12조)은 별도 규정
			2. 안전점검의 종류
			(1) 정기: 세심한 외관조사, 육안·간단한 측정기기
			(2) 정밀: 면밀한 외관조사 + 간단한 측정·시험
			부재별 상태평가, 외관조사망도 작성
			제3종은 정기점검 결과 D·E등급만 실시(영 8조)
			(3) 긴급: 붕괴·전도 위험 판단 시, 행정기관 요구 시
			정밀점검 수준, 손상점검·특별점검으로 구분
			(4) 정밀안전진단(구분): 측정·시험 + 안전성평가
			결함 원인 규명, 보수·보강 방법 제시
			정기 → 정밀점검 → 긴급(정밀 수준) → 정밀안전진단
			외관조사 → 측정·시험·상태평가 → 안전성평가·보수방법

번호

2

3. 실시 시기(세부지침 2021.12, 현행 별표 3 대조 전)

등급	정기점검	정밀(그 외)	정밀안전진단
A	반기 1회	3년 1회	6년 1회
B·C	반기 1회	2년 1회	5년 1회
D·E	연 3회	1년 1회	4년 1회

· 정밀점검 건축물: 4·3·2년에 1회(A / B·C / D·E)

· 정기 D·E: 해빙기·우기·동절기 전 각 1회

· 최초 정밀점검: 준공 후 3년 이내(건축물 4년)

· 진단(1종) 최초: 준공 10년 경과 후 1년 이내

4.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(현행 법 12조, 영 10조)

· 정기 진단: 제1종, 정밀점검 D·E등급 제2종(건축물 제외)

· 준공 30년 경과·진단 미실시 2·3종 중 C·D·E등급

· 점검 결과 필요 시: 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내 착수

· 하자담보 만료 전 마지막 정밀점검: 전문기관 의뢰

학습용 답안 예시 / 공식 정답·채점기준 아님